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및 기평가보험

이성남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 선임조사역

1. 사례

갑은 자동차, 농기계의 고무부품 제조·판매를 해 오던 중 1998. 6. 28. 보험회사와 ① 보험기간 : 1998. 6. 28 ~ 1999. 6. 28(1년), ② 보험목적물¹⁾ : 지상 2층 공장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기구 및 동산 일체, ③ 보험가입금액 : 이 사건 건물 2억5천만원, 기계·기구 일체 5억7천원, 동산 일체 2억원(도합 10억2천만원), ④ 보험료 : 400만원(일시납)으로 하는 내용의 공장화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9. 4. 18. 19시 17분경 이 사건 건물 중 A동 2층 부품 조립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A동 일부)와 기계·기구의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후 평가한 결과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입 당시의 보험가액²⁾은 20억원으로 밝혀졌으며 갑은 건물에 대한 수리비,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손상된 기계·기구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였다. 갑은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기 비용일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전부보험이 아니므로 비례보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비중 철거비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 수리비로 볼 수 없어 보상할 수 없으며 손상된 중고기계·기구는 새로운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가치의 증가가 발생하였는 바, 그동안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분쟁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2. 문제의 제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체결한 것으로 은행의 심사가액 전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자 전부보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의 비례보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은행의 대출과정에서 결정된 보험목적물에 대한 심사가액 및 감정가액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평가보험이자 전부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이 같은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험증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

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논점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

가.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합치에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 합치라 함은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이 주관적 합치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³⁾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낙성계약이다.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상법은 제53조 및 제638조의2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자가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여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청약한 조건대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조).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나. 보험증권

(1) 의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요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의 성립여부나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40조제1항).

(2)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보험증권은 권리의무관계가 화체된 유가증권은 아니다. 보험증권은 상법에서 법정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식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증권이라 함은 어떠한 사실을 기재하여 증권에 기재된 사실대로 권리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판례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라고 하여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⁴⁾

4. 사례의 해결

가. 의의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시가는 시장에서 의미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한 액수가 보험가액으로 의제된다.

나. 보험가액의 결정

보험가액은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보상 한도이자 그 보험계약 제반 성질의 판단기준이 되고 동시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⁵⁾ 보험가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기평가보험, 후자를 미평가보험이라고 한다.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 그리고 기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한 가액이 보험가액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정한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관련 판례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되는바,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 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 상법 제670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관련 판례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7429 판결).

5.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대 한도액을 가리킨다. 이는 약정보험금액이라고 하는데 손해 발생시에 실제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보험금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6.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일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상호 일치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보험목적물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보험가입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대략적인 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중

중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얼마로 설정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일치시켜야 한다.

가. 초과보험

(1) 의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도 1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와 수개의 피보험이익, 보험기간을 함께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에서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보험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된다.

(2) 효과

초과보험이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의 감액은 기왕에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제1항).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상법 제669조제4항) 이 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초과보험이라는 점과 그 것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⁶⁾

나. 일부보험

(1) 의의

일부보험이라 함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즉 보험목적의 가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이다. 예컨대 보험가액 5억원의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액은 1억원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효과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보험가액 5억원인 건물을 보험금액 3억원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3천만원을 보상한다(5천×3억/5억).

7. 사례해결기

가.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평가보험인지 여부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

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

다. 폐기물처리비용이 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683조는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1항도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라.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여 객관적 가치가 상승한 경우 보상처리방법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

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조달가액의 산정시와 마찬가지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계·기구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마. 결론

보험증권에 보험가입금액이 기재되었고 은행의 대출과 연계된 보험계약으로서 은행의 심사결정액을 그대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미평가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사고후 평가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일부보험에 해당하여 비례보상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건물의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용은 화재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이 마땅하고 신품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기구의 객관적인 가치가 손해 발생시의 가액을 넘은 경우에는 감가액을 고려하여 상승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보상이 타당하다. ㉞

주)

- 1) 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객체
- 2) 보험목적의 시가
- 3)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명의로 보험
- 4)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고 있고 보험계약의 해지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 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 6) 김성태, 보험법강론, 392면
- 7) 대법원 1988 2.9.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